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1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4월 26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1. 5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, 인용 기금명 변경 등에 따른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(안 제4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0.1.1)에 따라 “지역발전 협력기금”이 “지역상생발전기금”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5조제4호 및 제6조제4호)
-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문구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조례안은 2006. 3. 9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」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와 「동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서 그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.
- 안 제5조제4호에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7조제1항의 개정예 따라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용 기금명칭을 변경 함.
- 기타 부분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, 인용 기금명 변경 등에 따른 불일치 해소를 위해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(안 제4조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0.1.1)에 따라 “지역발전협력기금” 이 “지역상생발전기금”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5조제4호 및 제6조제4호)
- 다.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문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필요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조표 : 따로붙임
 - (2) 입법예고(2011.3.10 ~ 3.30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사무 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하며, “각종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각종 기금”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금”을 “각종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통합관리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법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를 “10년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지역발전협력기금(이하 “협력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역상생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협력기금”을 “발전기금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구에서”를 “영등포구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</u>」 ----- <u>영등포구</u> ----- <u>각종 기금</u>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</u> <u>금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금”이란 기금에서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현금(예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~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각종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 -----.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<u>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영</u> <u>등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법 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(이하 “존속기한”이라 한다)은 <u>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<u>10년으로 한다.</u>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재원)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협력기금(이하 “협력기금”이라 한다)으로부터의 차입금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재원)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지역상생발전기금(----- “발전기금” -----)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통합관리기금의 용도)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지방채 상환과 협력기금에의 예치</p> <p>5.~6. (생 략)</p>	<p>제6조(통합관리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발전기금 -----</p> <p>5.~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.</p> <p>②~⑥ (생 략)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----- ----- 총괄 ----- --.</p> <p>②~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 <u>구</u>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2조(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 <u>영</u>등포구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